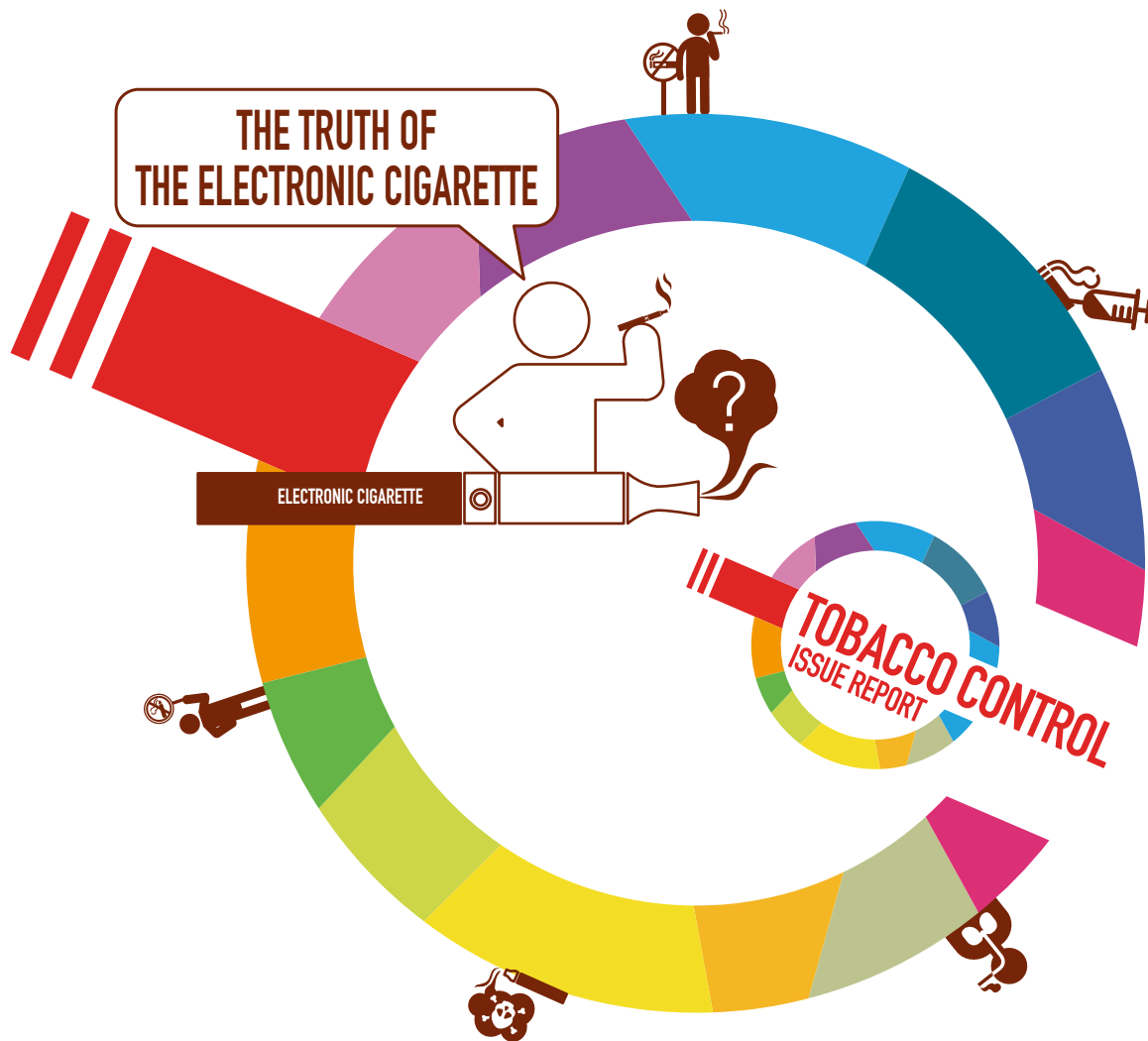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A monthly review and analysis of global tobacco control trends

금연이슈리포트



전자담배, 담배의 또 다른 이름인가 새로운 금연보조제인가 전자담배 사용의 예방과 규제가 필요한 이유

Infographic

전자담배에 관한
오해와 진실

Monthly Updates

이 달의 정책
이 달의 연구

Monthly Highlights

전자담배란?
전자담배, 금연정책의 “뜨거운 감자”가 되다
각국의 전자담배 규제 방안
전자담배에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

Monthly Index

담배 재배 현황

10

Vol. 29
October
2015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A monthly review and analysis of
global tobacco control trends

CONTENTS

Infographic

전자담배에 관한 오해와 진실

Monthly Updates

- 04 이 달의 정책
- 06 이 달의 연구

Monthly Highlights

- 09 전자담배란?
- 09 전자담배, 금연정책의 “뜨거운 감자”가 되다
- 12 각국의 전자담배 규제 방안
- 15 전자담배에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

Monthly Index

- 16 담배 재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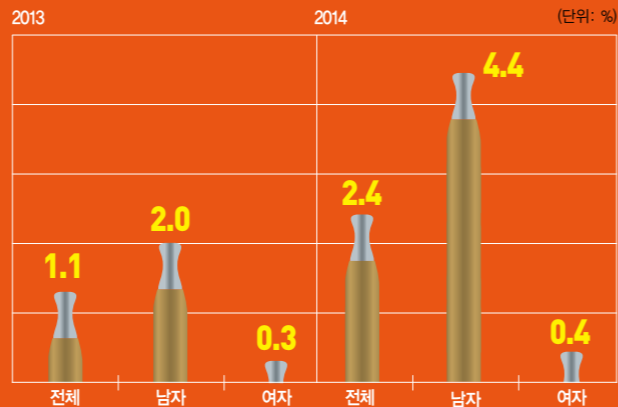
발행인 장석일
기획총괄 안문영, 오유미
편집·구성 이선영, 김지혜, 이정은

전자담배에 관한 오해와 진실

Electronic cigarettes -
true or false?

전자담배 사용률

| 성인(만 19세 이상)의 전자담배 사용률 |



※전자담배 현재사용률: 최근 한 달 동안 전자담배를 피워본 적이 있는 비율

|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률 |

구분	'11	'12	'13	'14	'15	
전자담배 현재 사용률	전체	4.7	3.7	3.0	5.0	4.0
	남학생	7.3	5.8	4.7	8.1	6.2
	여학생	1.7	1.5	1.1	1.5	1.5
전자담배 사용자의 일반담배 동시 사용률	전체	76.4	74.8	74.0	77.5	80.8

※전자담배 현재 사용률: 최근 30일 동안 전자담배를 사용한 사람의 비율

전자담배의 증기는 수증기와 다를 바 없다? 발암물질 & 유해 독성물질 검출!

- ☞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전자담배의 증기(기체)에서는 결련 대비 최대 1.5배의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됨.
- ☞ 다른 연구에서도 포름알데히드 뿐만 아니라 아세트알데히드와 담배특이니트로사민과 같은 발암물질 및 프탈레이트류와 같은 독성물질도 검출됨.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는 전혀 해롭지 않다? 전자담배는 일반담배 사용의 가교!

- ☞ 니코틴 유무와 관계없이, 전자담배는 “흡연”이라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도록 만들어 비흡연자, 특히 청소년의 흡연예방 효과를 저해함.
- ☞ 게다가, 대부분의 전자담배 사용자가 결련담배와 전자담배를 함께 사용하는 이중사용(Dual-use) 형태인 만큼, 전자담배 사용이 흡연행위를 지속하는 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

전자담배는 금연에 도움이 된다? 과학적 근거 불충분!

- ☞ WHO에서는 전자담배가 금연보조제로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있으며,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로 홍보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 ☞ 오히려 전자담배의 장기사용에 대한 과학적 및 역학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전자담배의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기 전에 금연보조제로 광고·판촉하는 것은 시기상조임.

전자담배는 니코틴의 양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 니코틴 중독의 위험이 덜하다?

니코틴 흡입량 조절 불가 & 심각한 중독 위험!

- ☞ 소비자보호원 조사 결과 혼합형 니코틴액상(니코틴 함량 12mg/ml로 표시)의 기체상 니코틴 함량은 결련 대비 최대 2배임.
- ☞ 특히 제품 간 니코틴 함량 차이가 최대 3배까지 발생하는 등 전자담배의 니코틴 흡입량은 소비자가 조절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움.
- ☞ 뿐만 아니라, 니코틴 용액을 직접 제조 또는 희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부 접촉이나 영유아가 시럽 등으로 오인하여 직접 섭취하는 등 심각한 수준의 니코틴 중독 위험이 높음.

전자담배는 간접흡연의 위험이 없으므로 금연구역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전자담배도 담배, 금연구역에서 사용 금지!

- ☞ 전자담배의 기체에는 니코틴 뿐만 아니라 각종 발암물질, 독성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련담배와 마찬가지로 간접흡연의 위험이 존재함.
- ☞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명백한 담배제품이므로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경우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위법행위이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이 가능함.

※출처
한국소비자원.(2015).전자담배 안전실태조사
보건복지부.(2015).[보도자료] 전자담배,
금연보조제가 아닌 담배입니다!
WHO.(2014). Countries vindicate cautious stance on
e-cigarettes. Bull World Health Organ 2014;92:856-857.



이 달의 정책



캐나다, 무광고포장(Plain Tobacco Packaging) 담뱃갑 법안 발의

이달 5일 캐나다 자유당에서 무광고포장 담뱃갑 도입 법안을 발의했다. 캐나다암협회의 지지와 함께 발의된 해당 법안은 2012년 호주와 같이 담뱃갑에서 브랜드 로고, 색상, 브랜드 디자인을 제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캐나다가 호주의 선례를 따른다면, 건강경고는 담뱃갑의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는 상태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적으로 올해 초 무광고포장 법안이 통과된 아일랜드와 영국은 내년 5월부터 해당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며,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스웨덴 또한 무광고포장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이탈리아, 취약계층 보호 위한 담배규제 강화

이달 셋째 주, 이탈리아 내각이 아동 및 임산부 동승 차량 내 흡연을 규제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해당 조치는 소아과 병의원, 산부인과, 신생아 병동 등의 부근을 금연구역화하고, 취약계층에 담배제품, 전자담배 등 니코틴 함유 제품 판매 사실이 적발될 시 보다 엄격한 처벌을 적용하는 등의 새로운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이탈리아는 올해 말까지 담뱃갑 경고그림 크기 확대를 포함한 유럽연합 담배규제지침(EU Tobacco Product directive) 이행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들을 법제화할 예정이다.



미국 연방정부, 위탁 수하물 내 전자담배 반입 불법화

미국 새로운 연방법에 따라 미국 항공에 탑승할 경우, 전자담배를 위탁 수하물에 반입할 수 없게 되었다. 미국 교통부는 이달 27일 “지난 6년간 기내에서 전자담배로 인한 사고가 26건이며, 그중 다수 건이 수하물 내 전자담배 사고다.”라고 설명하며 해당 조치가 화재를 방지하기 위함임을 밝혔다. 일례로 지난 1월 로스앤젤리스 국제공항에서 연착된 여객기의 수하물 내 전자담배가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전자담배를 기내에 휴대하여 반입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나 기내에서 충전하는 것은 불가하며, 해당 조치는 11월 둘째 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호주 퀸즈랜드 주, 금연구역 확대 및 담배제품 판촉 규제 강화

호주 퀸즈랜드 주가 금연구역 확대를 골자로 하는 담배규제강화 조치를 단행했다. 퀸즈랜드 주 내 아동 스포츠센터, 보육센터, 스케이트장, 노인요양시설뿐 아니라 주정부 건물, 국립공원, 수영장, 노점상, 버스정류장과 그 근처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또한 정부, 상업, 비주거 건물 부근 금연구역 범위 기존 4미터에서 5미터로 확대되며, 지방의회는 이외 다른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덧붙여, 음악 페스티벌과 같은 행사에서 임시 소매점을 세워 담배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보건부 카메론 딕(Cameron Dick) 장관은 “매년 퀸즈랜드 거주민 3,700명 이상이 흡연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흡연 및 간접흡연은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것이 우리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단행하는 이유이다.”라고 설명했다.



헝가리, 전자담배 판매 및 광고 규제 법안 발의

헝가리 정부가 전자담배 및 카트리지 판매 규제 강화를 위한 법률안을 발표했다. 정부 웹사이트에 게재된 법률 개정안에 의하면, 전자담배 및 카트리지 제조업자와 판매자는 판매하기 6개월 전까지 제품을 등록해야 하며, 보건당국에 “행정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개정안에 첨부된 영향 평가 연구에 따르면 해당 조치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50억 HUF(약 196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규정을 위반한 전자담배 판매업자에는 최대 5천만 HUF(약 1억 9천만 원)까지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공장소에서의 전자담배 사용과 전자담배 및 전자담배 브랜드 광고 일체가 불법화된다. 헝가리 정부는 해당 법안에 대한 공청의견을 이달 21일까지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 달의 연구



무광고포장 담배와 비교한 일반포장 담배의 소비자 잉여 추정

endall, P., Eckert, C., Hoek, J., Farley, T., Louviere, J., Wilson, N., & Edwards, R. (2015). Estimating the 'consumer surplus' for branded versus standardised tobacco packaging. *Tobacco Control*. doi:10.1136/tobaccocontrol-2015-052488

담배업계는 무광고포장(standardised packaging)이 얼마나 흡연자 행태 변화에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본 연구는 이에 대응하여, 이미 효과가 입증된 담배가격 인상과 비교하여 무광고포장의 정량적 효과를 추정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지불용의가격을 비교하기 위해 18세 이상의 뉴질랜드 흡연자 311명을 대상으로, 4단계 가격 수준의 일반포장 담배(30%의 경고그림, 브랜드명 포함)와 무광고포장 담배(70%의 경고그림 포함) 중 선택하도록 하는 온라인 실험을 수행했다. 피험자들은 각 가격수준에서 무광고포장 담배보다 일반포장 담배를 더 많이 선택했으며, 평균적으로 일반포장 담배의 지불용의가격이 약 5%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선택실험은 일반포장 담배에 대한 소비자잉여(consumer surplus)의 근사치를 추정할 수 있게 하며, 그 크기는 건강경고의 주제와 피험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상기 두 가지 실험은 무광고포장과 건강경고 크기 확대가 뉴질랜드 성인흡연자에 대해 담배가격을 5% 인상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라는 것을 시사한다.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흡연예방뿐 아니라 성인 흡연자에 대한 무광고포장의 효과를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관리 규정이 다른 호주와 영국의 전자담배 인식, 시도, 이용의 경향

Yong, H. H., Borland, R., Balmford, J., McNeill, A., Hitchman, S., Driezen, P., ... & Cummings, K. M. (2015). Trends in e-cigarette awareness, trial, and use under the different regulatory environments of Australia and the United Kingdom. *Nicotine & Tobacco Research*, 17(10), 1203-1211. doi: 10.1093/ntr/ntu231

최근 전자담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전자담배는 각국의 상이한 규정 하에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각국 규정의 영향을 평가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전자담배 사용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호주와 전자담배가 쉽게 가용한 영국을 대상으로 전자담배에 대한 3년간의 인식 및 이용 패턴을 비교했다. 호주와 영국의 국제담배규제조사(International Tobacco Control surveys)의 2010년, 2013년 데이터를 추출하여 총 6,00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현재흡연자와 과거흡연자의 전자담배에 대한 인식, 시도, 이용은 호주보다 영국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두 국가 모두 2010년과 2013년도 사이에 해당 결과지표가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가 니코틴을 포함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영국이 73%로 나타났고, 호주는 허가 없이 니코틴을 포함한 전자담배를 판매·소지·이용하는 것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43%로 나타났다. 전자담배 사용은 두 국가 모두 흡연자일수록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호주와 영국이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를 달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국가의 전자담배에 대한 인식 및 사용은 2010년과 2013년 사이에 현재/과거흡연자에서 모두 급증하고 있으며, 니코틴 포함 전자담배 사용도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전자담배에 대한 소비자 선호 : 이산 선택 실험 결과 분석

Czoli, C. D., Goniewicz, M., Islam, T., Kotnowski, K., & Hammond, D. (2015). Consumer preferences for electronic cigarettes: results from a discrete choice experiment. *Tobacco Control*. doi:10.1136/tobaccocontrol-2015-052422

전자담배 시장의 급성장 및 다양화로 인해 전자담배는 규제당국에 중대한 과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전자담배제품 특성이 캐나다 소비자 인식과 사용 시도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2013년 11월, 16세 이상 캐나다인 91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이산 선택 실험(discrete choice experiment)을 수행했으며, 대상이 된 온라인 패널은 (1) 청소년·젊은 연령층 성인 비흡연자(n=279), (2) 청소년·젊은 연령층 성인 흡연자(n=264), (3) 성인 흡연자(n=372), 총 3개 하위그룹으로 구성되었다. 피험자에게 향, 니코틴 함유, 건강경고, 가격 등 각기 다른 특성의 조합을 가진 전자담배 이미지 선택지를 제시하고, 사용해보고 싶은지, 위해성이 낮거나 금연 보조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전자담배제품 1개' 혹은 '해당 없음'을 선택하도록 했으며, 각 결과지표에 대해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미친 특성을 다항로짓회귀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했다. 연구결과, 공통적으로 건강경고가 없는 것, 멘톨 향, 니코틴 저함량, 낮은 가격일수록 사용 시도 의향이 높고, 위해성이 낮다고 인식하고, 금연보조에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건강경고 포함 여부는 피험자들의 전자담배 사용 시도 의향(42%)과 금연 보조도구로서의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39%)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었으며, 향(36%)과 건강경고(35%)는 전자담배가 위해성이 낮다고 인식하는 것을 예측하는 유의한 요인이었다. 해당 결과는 소비자들이 전자담배제품특성 간 교환(trade-offs)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 과정은 하위집단별로 상이함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건강경고와 향이 소비자에게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 바, 이는 전자담배 규제 프레임워크에서 좋은 타겟이 될 수 있다.

이 달의 이슈



매년 한 해 동안 사용이 급증한 단어를 “올해의 단어”로 선정하는 옥스퍼드 사전이 2014년에 선정한 단어는 바로 전자담배 또는 전자담배의 증기 흡입 등을 뜻하는 ‘베이프(vape)’였다. 2004년에 처음으로 시장에 선보인 전자담배가 10년 사이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단어가 될 정도로 급성장한 것이다. 전자담배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논란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전자담배, 과연 금연보조제인가 담배대용품인가?

전자담배란?

우리가 흔히 전자담배라고 부르는 신종담배제품은 보다 정확하게는 전자식니코틴전달체 (Electronic Nicotine Delivery Systems), 줄여서 ENDS라고 부른다. 기존 담배제품의 대부분이 담배를 연소시킨 데에 반해, ENDS 제품은 배터리를 이용하여 기계 안의 액상 용액을 증기로 만들어 사용자가 이 증기를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이다. 대부분 일반 궤련담배와 유사한 디자인으로 제작되면서 전자담배 또는 e-cigarette 이라는 명칭으로 가장 많이 불려왔으나, 점점 그 모양과 종류가 다양해져 최근에는 전자물담배(e-shisha, e-hookah), 전자시가(e-cigar) 등의 제품도 등장하였다.

전자담배에 대한 정의는 각국에서 이를 어떻게 규제 또는 관리하느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전자담배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구분	정의
국내	담배사업법 (제2조)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전자담배는 “증기로 흡입하는” 담배에 해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27조의2) 니코틴이 함유된 액상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
해외	미국 배터리로 작동하며, 중독성이 강한 니코틴을 포함한 화학물질을 연무형태로 사용자가 흡입하는 장치
	세계보건기구 니코틴을 포함할 수 있는 액상을 기화시켜 사용자가 흡입하는 제품
	유럽연합 카트리지와 탱크 포함 여부와 무관하게 니코틴을 포함한 증기를 흡입하는 제품으로, 1회용제품 및 리필가능제품을 모두 포함

※출처 : 한국소비자원, (2015), 전자담배 안전실태 조사

전자담배, 금연정책의 “뜨거운 감자”가 되다

전자담배가 2004년 시장에 등장하자마자 지금처럼 큰 관심을 끈 것은 아니다. 전자담배의 급속한 성장은 최근 4~5년 사이에 두드러지게 관찰되었는데, 여기에는 금연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담배 대용품으로 전자담배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는 설명이 주를 이룬다. 즉, 전 세계적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일반 담배를 필 수 없는 공간에서 자유롭게 담배를 소비하기 위하여 전자담배를 사용하거나, 담뱃세를 인상하여 담배가격이 높아지면 니코틴 용액 충전이 가능한 전자담배를 구입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이란 판단에 전자담배 구매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게다가, 전자담배가 궤련담배보다 인체에 덜 해롭다는 인식이 만연해 짐에 따라 전자담배를 절연 또는 금연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인구도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전자담배 사용에 따른 인체유해성과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아직 부족한 수준이며, 이 때문에 전자담배를 기존의 금연정책의 효과를 저해하는 새로운 담배제품으로 볼 것인지, 고도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금연보조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학계와 정책관계자의 입장이 첨예한 실정이다.

전자담배에서 배출되는 증기는 수증기와 다를 바 없다?

전자담배의 인체유해성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그리고 자주 언급되는 것이 바로 전자담배의 성분과 배출증기에 관한 논쟁이다. 전자담배는 기본적으로 니코틴 용액을 희석하여 사용하며 기호에 따라 향료 액상을 추가하기 때문에 궤련에 포함되어 있는 타르 등 발암물질이 없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배출증기에 대해서는 수증기에 약간의 니코틴이 희석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간접흡연의 문제가 없다고 일부 광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올해 초에 발간된 소비자보호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담배의 증기(기체)에서 궤련 대비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 포름알데히드가 최대 1.5배까지 검출되었으며, 다른 연구에서도 전자담배 배출증기에서 아세트알데히드와 담배특이니트로사민과 같은 발암물질 및 프탈레이트류와 같은 독성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이 발표된 바 있다. 즉,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전자담배에서 배출되는 증기에도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검출되고 있으므로 간접흡연의 위험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용액에 중독성 물질인 니코틴이 포함된다는 점과 용액을 기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프로필렌글리콜이 흡입될 경우 인체에 자극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궤련에 비해 유해성분이 덜 검출된다 하더라도 전자담배 사용에 대한 경각심과 우려가 끊이지 않을 수 없다.

전자담배에서 배출되는 증기에는 대기 중으로 쉽게 휘발되어 피부 접촉이나 호흡기 흡입을 통해 신경계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휘발성 유기 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과 초미립자가 검출되기도 하는데, 특히 초미립자의 경우 사람의 폐에 보다 깊이 침투하여 폐 조직의 염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자담배의 간접흡연 위험에 대한 보건당국의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자담배는 금연구역에서 사용해도 무방하다?

전자담배가 대중, 특히 흡연자의 각광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금연구역에서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업계의 광고활동 때문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전자담배의 간접흡연 위험에 관한 논쟁과 연결되는 것인데, 전자담배에서 배출되는 증기가 수증기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것이 정책 도입 목적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전자담배에 간접 노출될 경우 인체에 흡수되는 니코틴 수준이 궤련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전자담배를 국내법상 명백한 담배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금연구역 내에서 모든 종류의



담배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니 만큼 궤련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여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

전자담배는 니코틴 양을 조절할 수 있어 중독의 가능성이 낮다?

니코틴은 중독 물질로서, 그 자체로는 발암물질은 아니지만 종양유발물질(tumor promoter)로 작용하며,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임산부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태아와 청소년이 니코틴에 노출되면 장기적 측면에서 두뇌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자담배의 성분과 관련하여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슈가 바로 이 니코틴에 관한 것이다. 전자담배의 인체무해성이나 금연보조제로의 효과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전자담배가 궤련에 비해 적은 양의 니코틴을 포함하고 있으며, 용액을 희석하여 사용하게 되면 니코틴 양을 조절하면서 보다 쉽게 니코틴의 중독에서 벗어나 금연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WHO는 전자담배를 통한 니코틴 흡입(nicotine inhalation)이 제품 특성과 사용자의 흡연행태 및 니코틴 용액 농도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에 단언할 수 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전자담배용 니코틴 액상의 경우에도 혼합형 니코틴액상(니코틴 함량 12mg/ml로 표시)의 기체상 니코틴 함량이 궤련 대비 최대 2배까지 조사되었으며, 특히 제품 간 니코틴 함량 차이가 최대 3배까지 발생하는 등 전자담배의 니코틴 흡입량은 소비자가 조절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사용과 관련한 또 다른 건강위해 요인은 사용자가 용액을 직접 다루거나 관리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수준의 중독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니코틴 용액을 직접 제조 또는 희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부 접촉이나 영유아가 시럽 등으로 오인하여 직접 섭취하는 등의 사례가 전자담배 사용과 함께 급증하고 있는데, 전자담배 액상을 안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하여 눈에 주입하거나 섭취한 사고 8건(12.7%), 액상누수와 유아가 오·사용한 경우가 각각 3건(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자담배 관련 위해사례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분	전자담배액상			전자담배기기		기타	계
	부작용	의약품오인	유아오사용	제품폭발	액상누수		
2012년	4	1	1	4	0	3	13
2013년	1	0	0	1	0	1	3
2014년	6	2	2	7	0	1	18
2015년 1월~4월	9	5	0	8	3	4	29
계	20	8	3	20	3	9	63

※ 출처 : 한국소비자원(2015)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된다?

전자담배에 관한 모든 논쟁의 시작이자 끝은 바로 금연보조제로서의 전자담배의 효과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전자담배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및 학술적 의견이 분분한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전자담배가 담배사용의 감소 또는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WHO에서는 전자담배가 금연보조제로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로 홍보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오히려 전자담배의 장기사용에 대한 과학적 및 역학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전자담배의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기 전에 금연보조제로 광고·판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특히 WHO 및 국가에서 공인된 금연보조 수단 중 그 어떠한 것도 폐에 직접적으로 니코틴을



전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할 것을 지적한 바 있다. 미국 식품의약청(FDA) 역시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카트리지에는 니트로사민, 디에틸렌 글리콜 및 기타 인체유해 성분이 검출된 바 있으며 연방 고등법원에서도 전자담배를 “안전한 금연보조제”로서 광고할 수 없다고 결정한 선례가 있는 만큼 전자담배의 금연보조제로서의 기능과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려의 목소리가 더 높은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전자담배가 담배사용의 감소보다는 유지나 증가에 기여할 위험이 더 크다는 점 또한 관계당국이 전자담배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전자담배 사용자는 전자담배를 단독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전자담배와 궤련을 동시에 사용하는 이중사용(Dual-use)의 형태인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전자담배로 절연 또는 금연을 할 수 있다는 입장과는 반대되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전자담배로 인하여 비흡연자 특히 청소년의 흡연이 조장될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2011년부터 꾸준히 증가한 전자담배 사용이 2013년에는 궤련 사용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는데 전문가들은 궤련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가향물질이 전자담배의 니코틴 용액에 사용되어 청소년의 호기심을 조장하는 것이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 급증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전자담배의 청소년 사용은 우리나라도 우려할 만한 수준인데, 제11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전자담배 현재사용률은 지난해 5.0%에서 4.0%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전자담배와 궤련의 이중사용 비율은 2014년 77.5%에서 80.8%로 4.3%증가하여 호기심에서 시작한 전자담배가 실제 흡연으로 이어지는 관문(Gateway)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률 (단위 : %)

구분	구분	'11	'12	'13	'14	'15
		전자담배 현재 사용률	전체	4.7	3.7	3.0
	남학생	7.3	5.8	4.7	8.1	6.2
	여학생	1.7	1.5	1.1	1.5	1.5
전자담배 사용자의 일반담배 동시 사용률	전체	76.4	74.8	74.0	77.5	80.8

※ 전자담배 현재 사용률: 최근 30일 동안 전자담배를 사용한 사람의 비율

각국의 전자담배 규제 방안

이러한 상황에서 점차 전자담배를 궤련담배와 마찬가지로 규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는 바로 전자담배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위험요소” 때문이다. WHO가 2014년에 발표한 전자담배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를 규제하고 있는 나라는 총 59개국으로, 이들 중 13개 국가는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전자담배 제품의 광고와 판촉을 금지하는 국가는 39개국, 궤련과 마찬가지로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도 30개 국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규제하고 있는 국가 역시 53개국에 달한다.

세계 전자담배(ENDS) 규제 현황 (WHO FCTC, 2014)

구분	규제하고 있는 국가 수					규제하지 않거나 무응답
	소비재	치료제	담배제품	기타	계	
니코틴 포함	14	12	22	11	59	135
니코틴 불포함	23	0	18	12	53	141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세계 담배규제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FCTC의 주요 조항에는 전자담배를 담배제품(tobacco product)으로 규제해야 하는 정책적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협약 제1조에서는 “담배제품”을 담뱃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맡기를 위하여 제작된

제품으로 정의하고 있는 만큼 담뱃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주 원료로 하는 전자담배 역시 담배제품으로 규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제16조 미성년자 담배판매 및 구매 금지(Sales to and by minors)에서는 미성년자에게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담배제품 형태의 사탕·과자·장난감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전자담배의 성분(예, 니코틴 유/무)에 관한 논쟁을 배제하더라도 국가의 담배규제 정책 차원에서 제품의 광고 및 판촉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셈이다.

2014년에 개최된 제6차 당사국총회에서는 협약 당사국이 전자담배의 가파른 성장세를 우려하며 사용자 및 비사용자에 대한 건강상의 위험, 금연보조효과 및 담배규제 정책 효과저해에 대한 대응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특히, 니코틴 유·무와 관계없이 담배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제품을 규제해야 한다는 데에 각국이 합의를 도출하여 향후 전자담배 제품의 예방 및 규제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였다.

WHO FCTC 제6차 당사국 총회 전자담배 관련 결정사항

- 니코틴 유무와 관계없이 이를 모두 규제하도록 함
- 비흡연자, 청소년 및 취약계층의 전자담배 사용 시작을 예방함
- 전자담배를 사용함으로써, 혹은 비흡연자가 전자담배 배출물인 증기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건강상의 위험(potential health risk)을 최소화해야 함
- 전자담배와 관련해 입증되지 않은 건강상의 효과를 주장하지 않도록 이를 방지함
- 담배업계의 상업적 및 기타 이득으로부터 담배규제정책(금연정책)을 보호함
- 각 당사국은 전자담배의 광고·판촉·후원을 규제 혹은 금지할 것을 고려해야 함

유럽연합

유럽연합(EU)의 경우 전자담배가 니코틴 중독과 궤양사용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EU 담배규제지침(Tobacco Products Directive)의 개정을 통해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유럽 내 전자담배 제품의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새로운 규제사항에는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용액의 니코틴 농도를 최대 20mg/ml로 제한하고 액상에 첨가제의 사용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전자담배에 부착하는 경고문구에 니코틴의 중독성과 비흡연자의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할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Tobacco Products Directive 2014/40/EU 주요 내용

- 1) 니코틴 함유액은 20mg/ml로 농도 제한, 리필용 니코틴 함유액은 10ml로 용량 제한, 1회용 카트리지는 2ml로 용량 제한
- 2) 전자담배기는 정상적인 사용환경에서 균일하게 니코틴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함.
- 3) 전자담배와 리필용기는 어린이가 쉽게 열 수 없고(child-proof and tamper-proof), 파손이 방지되고 (breakage-proof), 액상이 누수되지 않아야 함.
- 4) 사용설명서에 경고문구표시: "청년과 비흡연자에게 제품 사용을 추천하지 않음.", "이 제품은 매우 중독성이 강한 물질인 니코틴을 포함합니다. 비흡연자에게는 사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 5) 포장에는 모든 성분, 니코틴 함유량, 제품번호(batch number),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라는 문구를 표기
- 6) 니코틴 함유액상에 비타민, 타우린, 카페인과 같이 위험을 경감시켜주는 인상을 주는 첨가제의 사용을 금지함.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경우 전자담배를 "담배제품모방(imitation tobacco products)"으로 보고, 담배 광고 및 판매 규제의 차원에서 금지하고 있다. 이는 FCTC 제16조 미성년자의 담배판매 및 구매(Sales to and by minors)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담배제품 또는 담배제품과 연관된 포장 디자인과 흡사한 제과류 또는 기타 식품 또는 장난감 및 기타 제품의 수입, 유통,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다. 전자담배의 대부분이 궤련과 유사한 모양의 디자인을 취하고 있는 만큼 싱가포르 내에서 전자담배의 유통은 철저히 금지되어 있다.

영국

영국은 전자담배 규제와 관련하여 세계에서 가장 특이한 정책을 취하고 있다. 영국정부는 전자담배가 기존의 금연상담이나 약물치료를 금연에 성공하지 못한 흡연자들의 금연을 독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함을 염두에 두고, 전자담배가 금연보조제로 기능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마련하였다. 영국 의료 및 보건의료제품규제청(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의 승인을 받은 제품의 경우 처방전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데, 이 경우 의약품으로 제품이 관리되며 이들 제품에 한하여 금연보조제로서의 효과에 관한 광고가 가능하다. 단, 관련 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한 전자담배는 EU 담배규제법에 따른 규제가 적용되며 건강 관련 광고 및 판촉행위가 철저히 금지된다.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니코틴을 포함하는 전자담배는 담배제품으로 규정하며, 궤련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즉, 궤련과 마찬가지로 실내 공공장소 및 음식점, 버스정류장과 같은 금연구역에서의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모든 담배제품에 부착되어야 하는 경고문구도 전자담배에 예외가 아니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전자담배의 위해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전자담배가 니코틴 의존 및 중독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담배 특이 니트로사민(tobacco specific nitrosamines)과 포름알데히드 등이 포함되어 있음이 제품의 포장과 광고에 표기되어야 한다. 또한 전자담배의 니코틴 용액에 담뱃세를 부과하여 궤련과 유사한 수준의 가격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 사용률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발표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전자담배 사용률이 2013년 1.1%에서 2014년 2.4%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남성의 경우 2.0%에서 4.4%로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올해 7월에 발표된 2015 흡연실태 수시조사 결과는 이보다 더 증가한 5.1%로 기록되었으며, 그 가운데 궤련과 이중사용을 하는 비율은 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전자담배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성인(만 19세 이상)의 전자담배 사용률 (단위: %)

	2013	2014
전체	1.1	2.4
남자	2.0	4.4
여자	0.3	0.4

*전자담배 현재사용률: 최근 한 달 동안 전자담배를 피워본 적이 있는 분을

전자담배에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

전자담배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점차 강력해지는 담배규제 정책에 대응하여 다국적 거대 담배업계마저 전자담배 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하였으며, 전자담배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끊임없이 발표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결정적인 과학적 근거를 도출하기에는 시기상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HO와 전 세계 보건당국이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역설하는 이유는, 전자담배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위험성 때문일 것이다. 지금까지 흡연의 폐해로부터 인류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무력화되고, 담배규제 정책의 그간의 성과가 저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전자담배로 시작되는 신종담배 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금 정부의 정책방향을 현명하게 수립해야 한다.



이 달의 지표



Monthly Index에서는 담배규제와 관련된 주요지표에 대해 소개하고, 해당 지표의 최신내용을 전달하여 금연정책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매월 선정되는 담배규제 지표의 의의와 최신 데이터를 살펴보고 국내외 금연정책의 동향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담배 재배 현황 Tobacco growing

지표의 개요 및 의의

전 세계 최소 124개 국가에서 담뱃잎을 재배하고 있으며 과거 50년 동안 담배 재배는 고소득 국가에서 중·저소득 국가로 이동해왔다. 이 과정에서 아프리카의 담배 재배가 상당히 증가하였으며, 현재 20개 이상의 아프리카 국가가 담배를 재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소득 국가에서 담배 재배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담배가 가장 일반적인 현금작물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어 재배농가와 정부 관계자의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이익 창출이 높은 담배를 선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는 담뱃잎 재배의 장기적 부작용이 단기적 이익을 넘어선다고 본다. 먼저, 담뱃잎을 재배하는 노동자의 경우 담뱃잎 재배 과정에서 피부로 직접 니코틴이 침투하는 담뱃잎농부병(Green tobacco sickness)과 같은 직접적인 건강 위해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담뱃잎 재배 및 생산의 성격상 체구가 작은 여성이나 아동이 노동력으로 많이 투입되는 것 또한 담뱃잎 재배의 사회·경제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담뱃잎을 재배하기 위해 토양에 사용되는 살충제와 농약으로 인한 토지 및 수질 오염 등은 환경오염의 문제를 야기시킨다. 게다가, 담뱃잎 재배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가 증가하는 만큼 식량 작물의 재배 면적이 감소하여 전 세계적 식량 안보의 주요 위협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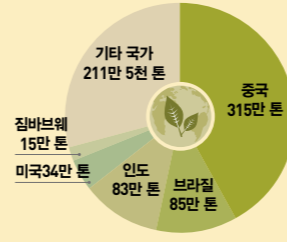
국내외 최신동향

세계의 담배 재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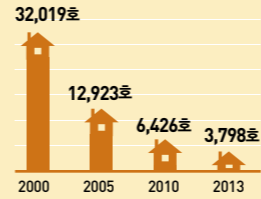
UN 산하 국제식량농업기구인 FAO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전 세계 잎담배 재배량은 약 743만5천만 톤에 이르며, 경작 면적당 생산량은 1,754kg/ha이다. 세계 최대 담배 생산국은 중국으로, 2013년에 315만 톤의 담뱃잎을 재배하였다. 중국 외에 인도와 브라질도 주요 담뱃잎 재배국에 속하며, 경작 면적당 생산량을 보면 주요 경제 선진국에서의 담뱃잎 재배도 상당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담배공급 감소를 위한 담배 재배 관련 조치가 전 세계 공통의 숙제임을 알 수 있다.

국가별	2011	2012	2013	
	잎담배 (M/T)	잎담배 (M/T)	잎담배 (M/T)	경작 면적당 생산량 (kg/ha)
세계	7,449,000	7,490,661	7,435,000	1,754
아시아				
중국	3,159,000	3,128,000	3,150,000	2,062
인도	830,000	820,000	830,000	1,6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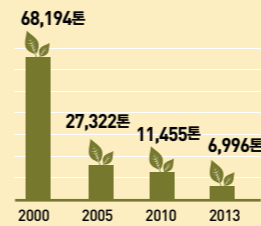
세계 잎담배 재배 현황 (2013년 기준)



우리나라 담뱃잎 재배 농가 현황



우리나라 담뱃잎 생산량



구분	1998	2000	2002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한국	35,000	36,000	36,000	36,000	36,000	36,000	36,000	36,000	36,000	36,000	36,000	2,483
일본	24,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791
북아메리카												
캐나다	34,000	35,000	35,000	35,000	35,000	35,000	35,000	35,000	35,000	35,000	35,000	2,300
멕시코	10,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2,049
미국	271,000	346,000	346,000	346,000	346,000	346,000	346,000	346,000	346,000	346,000	346,000	2,542
남아메리카												
브라질	952,000	811,000	811,000	811,000	811,000	811,000	811,000	811,000	811,000	811,000	811,000	2,099
아르헨티나	135,000	115,000	115,000	115,000	115,000	115,000	115,000	115,000	115,000	115,000	115,000	1,947
유럽												
프랑스	14,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2,188
독일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
그리스	24,000	24,000	24,000	24,000	24,000	24,000	24,000	24,000	24,000	24,000	24,000	1,529
헝가리	11,000	9,000	9,000	9,000	9,000	9,000	9,000	9,000	9,000	9,000	9,000	1,750
이탈리아	70,000	51,000	51,000	51,000	51,000	51,000	51,000	51,000	51,000	51,000	51,000	3,104
폴란드	34,000	35,000	35,000	35,000	35,000	35,000	35,000	35,000	35,000	35,000	35,000	2,174
스페인	34,000	33,000	33,000	33,000	33,000	33,000	33,000	33,000	33,000	33,000	33,000	3,300
아프리카												
말라위	175,000	73,000	73,000	73,000	73,000	73,000	73,000	73,000	73,000	73,000	73,000	1,105
탄자니아	13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664
짐바브웨	112,000	115,000	115,000	115,000	115,000	115,000	115,000	115,000	115,000	115,000	115,000	1,304
오세아니아												
오스트레일리아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2,973

* 출처 : 통계청, (2015), 국제통계연감

우리나라의 담배 재배 현황

우리나라도 담배 재배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이며 2013년 기준 담배 재배농가는 3,798호이고 재배면적은 3,594ha으로 1998년의 10%, 14%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농업생산액 중 담뱃잎 생산액의 비중 또한 감소 추세에 있는데, 1980년의 경우 엽연초 생산액은 전체 농업생산액의 약2.3%로 미곡(34.1%), 고추(8.9%), 배추(3.7)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02년부터는 1%미만으로 감소하였다.

담뱃잎 재배 농가

구분	1998	2000	2002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수량(톤,ton)	55,534	68,198	47,548	27,322	22,237	21,220	20,239	17,309	11,455	8,797	9,308	6,996
대금(백만원)	317,799	422,926	300,420	196,514	161,234	159,334	154,005	137,225	92,952	74,952	82,318	65,101
1kg당 가격(원)	5,723	6,201	6,318	7,193	7,250	7,509	7,609	7,928	8,115	8,520	8,844	9,305

담뱃잎 생산량

구분	1998	2000	2002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재배농가(호)	36,816	32,019	25,921	12,923	11,462	9,523	8,415	7,146	6,426	5,554	4,712	3,798
재배면적(ha)	25,796	24,320	20,969	12,000	10,808	9,000	7,949	6,987	6,411	5,396	4,539	3,594
호당면적(ha)	0.70	0.76	0.81	0.93	0.94	0.95	0.94	0.98	1.00	0.97	0.96	0.95

* 자료 : 엽연초생산조합중앙회

FCTC에서는 제17조와 제18조를 통하여 담배 재배의 사회·경제 및 환경적 위험에 대한 정부의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정책권고안이 지난 2014년 10월 러시아에서 열린 제6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특히, 담배규제 정책이 점점 강화되어 가고 있는 만큼 담배를 대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작물을 개발 및 확산하고 담배 재배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예측하기 위해 먼저 현재의 담배 재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건복지부.(2015).[보도자료] 전자담배, 금연보조제가 아닌 담배입니다!

한국소비자원.(2015).전자담배 안전실태조사

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2015). Electronic Cigarettes: A Summary of the Public Health Risks and Recommendations for Health Care Professionals. <https://www.cdph.ca.gov/Documents/EcigHealthAdvisory01282015.pdf>

Health Promotion Board, Singapore Government. <http://www.hpb.gov.sg/HOPPortal/health-article/674>

Health Sciences Authority, Singapore Government. http://www.hsa.gov.sg/content/hsa/en/Health_Products_Regulation/Tobacco_Control/Overview/Tobacco_Legislation/Prohibition_on_Certain_Products.html

WHO.(2014). Countries vindicate cautious stance on e-cigarettes. Bull World Health Organ 2014;92:856-857.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

✉ 구독신청

매월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메일주소로 소속, 성명을 기재하여 신청해주시십시오.

홈페이지 : www.khealth.or.kr

구독신청 이메일 주소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tcir@khealth.or.kr

📖 11월호 예고

2015년 11월호 금연이슈리포트에서는 담배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는 담배종반전(Tobacco Endgame)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금연선진국들이 앞다투어 국가계획으로 내세우고 있는 담배종반전이란 무엇이며, 담배사용을 종식시키고 담배로부터 미래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전 세계의 노력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국가금연지원센터
National Tobacco Control Center

100-705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24층
문의 TEL 02-3781-3500 FAX 02-3781-2299